##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74

발의연월일: 2023. 2. 13.

발 의 자:위성곤·박찬대·김용민

문진석 • 양정숙 • 윤영덕

김승남 • 이성만 • 이개호

최인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가축운반 중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고, 특히 도로 등다수 이용시설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 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60조). 법률 제 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업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⑪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①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
	른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
	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
	<u>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u>
	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업자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